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

발의년월일 : 1999년 8월 5일

발의자 : 김진영의원외4인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및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5680호, 15715호)되어 국내·외 여비중 숙박비등이 현실화 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관련 별표6 비고 제3호, 별표7 비고 제2호)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을 조정 및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함.

2. 주요골자

- 가.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 변경하고, “숙박비” 다음(“준비금”앞에) “식비”를 삽입함. (안 제6조 제1항·제2항 및 별표1)
- 나. “국내여비지급구분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국외여비지급구분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용어 변경함. (안 제7조 제1항·제2항 및 별표1)
- 다. 숙박비(종전:숙박료)의 의원란은 “19,500원”을 “2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비고제3호중 “철도운임구분표”를 “철도운임란”으로, “철도운임구분표를”을 “철도운임란의 등급을”으로, 비고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 변경함. (안 별표1)
- 라.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철도운임란의 “철도임”을 “철도운임”으로, 선박운임란의 “선임”을 “선박운임”으로 함. (안 별표2)
- 마. 숙박비중 의장·부의장 및 의원란을 각각 인상 조정하고, 비고제1호중 “국외여비규정 제16조 관련「별표2」”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관련「별표4」”로, 비고제2호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 변경함. (안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및 별표7
 공무원여비규정 내용 참조(대통령령 15680호, 15715호)
- 나.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①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동조 ②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동조②항중 “숙박비”다음 (“준비금”앞에) “식비”를 삽입한다.

제7조 제①항중 “국내여비지급구분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하고, 동조 ②항 “국외여비지급구분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한다.

별표1중 “국내여비지급 구분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하고,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숙박비의 의원란은 “19,500원”을 “22,000원”으로 한다.

별표1 비교란의 제3호중 “철도운임구분표”를 “철도운임란”으로 하고, “철도운임구분표를”을 “철도운임란의 등급을”으로 한다.

별표1 비교란의 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2중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하고, 철도운임란의 “철도임”을 “철도운임”으로, 선박운임란의 “선임”을 “선박운임”으로, 숙박비의 의장·부의장란은 “가등급130 나등급90 다등급72 라등급62”를 “가등급 137 나등급99 다등급76 라등급65”으로, 의원은 “가등급114 나등급74 다등급55 라등급46”을 “가등급120 나등급78 다등급58 라등급51”으로 한다.

별표2 비교란의 제1호중 “국외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2」”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4」”로 한다.

별표2 비교란의 제2호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여비의 종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p> <p>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준비금으로 구분한다.</p>	<p>제6조(여비의 종류) ①.....</p> <p>.....</p> <p>....., 숙박비,</p> <p>②.....</p> <p>.....</p> <p>....., 숙박비,</p> <p>식비,</p>												
<p>제7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는 별표1의 <u>국내여비지급구분표</u>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는 별표2의 <u>국외여비지급구분표</u>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7조(여비의 지급구분) ①.....</p> <p>....., 국내여비정액표.....</p> <p>②.....</p> <p>....., 국외여비정액표.....</p> <p>.....</p>												
<p>(별표1) <u>국내여비지급 구분표</u>(제7조 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숙박료(1야당)</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장·부의장</td><td style="text-align: center;">41,0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원</td><td style="text-align: center;">19,500</td></tr> </tbody> </table>	구 분	숙박료(1야당)	의장·부의장	41,000	의 원	19,500	<p>(별표1) <u>국내여비정액표</u>(제7조 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숙박비(1야당)</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장·부의장</td><td style="text-align: center;">41,00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 원</td><td style="text-align: center;">22,000</td></tr> </tbody> </table>	구 분	숙박비(1야당)	의장·부의장	41,000	의 원	22,000
구 분	숙박료(1야당)												
의장·부의장	41,000												
의 원	19,500												
구 분	숙박비(1야당)												
의장·부의장	41,000												
의 원	22,000												

비고 : 1~2(생략)

-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4. 국내여비규정... (중략)...

비고 : 1~2(생략)

- 3. 철도운임란.....
-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
-
-
- 4. 공무원여비규정(중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관련)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제7조 제2항관련)			
(단위:미불화)				(단위: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숙박비 (1야당)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가동급 130 나등급 90 다등급 72 라등급 62	의·장 부의장 철도운임. 선박운임. 137 99 76 65
의원	• (생략)	• (생략)	가동급 114 나등급 74 다등급 55 라등급 46	의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20 78 58 51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u>국외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2」</u> 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u>국외여비규정(중략)</u>				비고 : 1.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4」 2. <u>공무원여비규정 (중략)</u>			